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인 중소기업자가”를 “법인이”로,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등에 관한”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업 취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제38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제15조제6항제3호의 창업기업제품 등록, 홍보
업무 및 제15조제6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제한”
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 사유 및 처분 기준(제40조제
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을 감경하거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
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 후 산
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

제한 기간은 7년을 한도로 한다.

다.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지원금 환수범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1호	5년 이내	전액 이 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2호	3년 이내	전액 이 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3호	3년 이내	해당금액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4호	5년 이내	전액 이 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5호	환수금, 제재부가 금을 납 부할 때 까지	-
바.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6호 및 이 영 제40조제1 항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40조제1항 제1호	3년 이내	전액 이 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 제2호	2년 이내	전액 이내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0조제1항 제3호	1년 이내	전액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제4호	3년 이내	전액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u> 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후단 신설>	4. <u>법인이</u> ----- ----- 5 <u>0</u> ----- ----- ----- -----. <u>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u>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창업지원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삭제>
1. 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정책정
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창업교육 활
성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
·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특화형
신산업 · 기술 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
항
8.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
련한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
단체 간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 간 사업 조정에 관
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련한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
항
10. 그 밖에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④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제36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이나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시·도: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

⑤ 위원장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신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2. (생략)

<신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다음 각호의

-----.

1.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업 취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u><신 설></u> ③·④ (생 략)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u>참여제한 사유</u>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제15조제6항제3호의 <u>창업기업제품 등록, 홍보 업무 및 제15조제6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u>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u> ② ----- <u>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u>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 사유 및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1. -----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u>기간을 감경하거나 참여제한을</u> 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u>기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나. · 다. (생략)	----- ----- ----- <u>기간, 환</u> <u>수금을 감경하거나 참여제</u> <u>한, 지원금 환수를</u>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기간, 환수금</u>----- ----- 나. · 다. (현행과 같음)
---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u>지원금</u> <u>환수범위</u>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1호	5년 이내	<u>전액 이</u> <u>내</u>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2호	3년 이내	<u>전액 이</u> <u>내</u>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3호	3년 이내	<u>해당금액</u> <u>이내</u>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제1 항제4호	5년 이내	<u>전액 이</u> <u>내</u>

다. 정당한 사유 없이 <u>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63조제1항제5호	<u>환수금,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때까지</u>	二
바. 그 밖에 <u>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법 제63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40조제1항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3년 이내	<u>전액 이내</u>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2년 이내	<u>전액 이내</u>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1년 이내	<u>전액 이내</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u>	<u>제40조제1항제4호</u>	<u>3년 이내</u>	<u>전액 이내</u>